

계층에 대한 보건·복지서비스 체계확립 및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·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5. 7. 31일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 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
-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표준안과 상위법령에 맞게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, 조례안 제2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, 조례안 제3조 각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조례안 내용중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각 협의체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?
- 답 : 대표협의체는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말하고, 실무협의체는 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”를 말하며 각 협의체는 “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”를 뜻합니다.
- 문 : 조례안 제3조(구성)에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군수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빠진 사유는 ?
- 답 :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시군구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었으나,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관계와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- 문 :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·도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람.
- 답 :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국·도비 지원문제는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 또는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.
- 문 :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포함되는지 ?
- 답 : 그것은 별도입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7.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